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기존 금전을 이용한 행위 외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등).
-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하여도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등).
-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 형태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II. 검토의견

1. 피해 가상자산의 환급(안 제1조, 제2조제2호·제5호 등)

-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기존 금전을 이용한 행위 외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까지 확대하고, 피해환급 대상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는 ‘피해자산’으로 확대하여, 가상자산 형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법률의 제명은 주요 규정 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주된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상위 개념을 사용하여 제명을 정하여야 함.¹⁾
 - 현행 제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피해자산”의 개념을 제명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함.

1) 법제기준과 실제, 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p. 75

＜ 수 정 의 건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u>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u>	(현행과 같음)	<u>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u>

2. 피해자 환급대상 가상자산의 현금 환급(안 제10조제4항 신설)

- 개정안은 가상자산 형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환급대상이 되는 가상자산²⁾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하여 갖는 가상자산 계정 명의인의 채권³⁾⁴⁾⁵⁾이 소멸되는 것뿐이지, 해당 가상자산이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

2)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거나(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 9855 판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 3619 판결).

3) “하급심 판결에서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는 ‘임치 유사의 비전형계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며(서울고등법원2022. 12. 8. 선고 2021나2010775 판결),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귀속하고,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만환청구권만을 갖게 되는 구조임”(신지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私法적 성질에 관한 소고-Unidroit 「디지털 자산과 사법 원칙」에 관한 비판적 소개를 중심으로, 명지법학 제23권제2호, 212쪽)

4)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2022. 12. 8. 선고 2021나2010775 판결)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인도청구 사건에서 ① 암호화폐는 은행계좌와 유사하게 암호화폐 거래소 소유의 전자지갑에 보관되고, ② 당사자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자신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바,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각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⁶⁾⁷⁾ 이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 환급할

사이의 계약은 유상입치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비전형계약으로서, ③ 비트코인 이전 내지 반환의무는 종류채무와 유사하다고 판시함.

- ① 피고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I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매수하거나 송금받는 경우, 거래소 회원은 각 거래마다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계정(가상의 입금주소로서 은행의 가상계좌와 유사하다)을 이용하지만 회원이 지급받은 암호화폐는 피고 소유의 전자지갑(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고유 주소를 가지는 디지털 보관함으로서 은행계좌와 유사하다)에 보관되고, 다만 회원의 계정상 잔고에 입금된 암호화폐의 수량이 표시된다.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개인 또는 거래소의 전자지갑은 고유한 주소 값을 가지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고유한 값이나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각개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실체 없이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서 디지털 정보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상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등 참조). 결국 비트코인 보관에 관한 법률관계를 민법상의 입치계약관계 그 자체로 볼 수는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유상입치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비전형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③ 비트코인 자체에는 고유한 값이나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각개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비트코인 이전 내지 반환의무는 종류채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민법 제37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출금을 요청한 주소로 비트코인을 이전하기 전에 비트코인의 멸실·훼손 등 사정이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동종·동질·동량의 비트코인을 다시 조달하여 이전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5) 참고로, 고객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관은 예탁받은 증권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의 예탁구조의 성격은 신탁이 아닌 혼장임치(정확히는 위임과 혼장임치의 공존)로 이해되며, 이 때 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증권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4항, 혼장임치). 이런 혼합보관으로 인하여, 투자자와 예탁자는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의 종류, 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같은 법 제312조제1항).(오현주·현승아·안상현, 해외주식 거래의 법적 쟁점과 과제, 기업법연구 제35권제4호, 38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④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312조(권리 추정 등) ①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6) 우리나라의 대형 거래소들은 대체적으로 관리의 편의, 해킹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거래소 내 이용자 명의의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들어오는 것과 거의 동시에 거래소 명의의 전자지갑에 전송되도록 컴퓨팅 시스템으로 코딩해 놓고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거래소 명의의 콜드월렛 전자지갑에 보관해 놓음. [이석준,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가상자산사업자) 파산절차에 대한 실무 연구 - 주식회사 코인빈 사건(서울회생법원 2019하합29)을 중심으로, 사법 2023년 제1권 통권 64호, 490쪽]
 - 7)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입고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가상자산사업자로 이전되고,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출고청구권을 취득하게 됨.(최자유, 가상자산시장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고찰 - 법원의 판례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2024년 6월, 135쪽)

때에 피해자산 자체를 환급하는 방법 외에 해당 가상자산 매각한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함.⁸⁾

- 또한,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의 행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기관”의 대강을 정하고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점과, “매도의 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 수 정 의 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지급) ① ~ ③ (생략) <u>④ 제1항의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u>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지급) ① ~ ③ (생략) <u>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u>

8)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변경된 후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함. 다만, 운용이익의 반환범위에 관하여는 i) 수익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하기 때문에 운용이익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곽윤직, 김준호), ii) 수익자의 운용이 없었더라도 손실자의 운용에 의하여 얻었으리라고 추정되는 통상적 운용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견해(이은영), iii) 수익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송덕수), iv)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용을 제외한 이득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김형배), v) 악의의 수익자는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김상용) 등이 있음. 대법원(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 25551 판결 등)은 ‘손해의 발생’을 성립요건으로 하여, 그것이 수익자가 얻은 이익보다 적은 때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책임이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한도로 제한된다는 입장임.(백규재, 부당이득으로서 운용이익의 반환 - 미국 「(제3차)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법 2025년 제1권 통권 제74호, 205쪽)

④ (생략)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환급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해당 매도의 행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	--	--

3. 가상자산 피해자에 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6조)

- 안 부칙 제6조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를 개정 법률에 따른 피해자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둬.
- 다만, 적용례는 신법·구법의 변경과정에서 신법의 적용대상 또는 적용시기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신법의 적용대상 또는 적용시기 등을 보다 명확히 규율하려는 경우에 사용하는 반면, 경과조치는 신법·구법의 변경과정에서 구법의 효력 일부를 신법의 시행일 이후까지 미치도록 하는 경우에 사용함. 즉, 적용례가 신법의 적용관계를 밝히기 위한 규정이라면, 경과조치는 구법에 관한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⁹⁾

- 안 부칙 제6조의 경우, 종전 피해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신법’을 종전 피해자에게도 적용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경과조치를 적용례로 수정함.

< 수 정 의 건 >

개 정 안	수 정 의 건
부 칙	부 칙
제6조(<u>경과조치</u>)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제2조(가상자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에 대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9) 법제기준과 실제, 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p. 853